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2005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6년도 전망

2005. 12

K O T R A

통상전략팀

목 차

[요 약]	1
1. 최근 국제통상환경	4
2. 2005년 수입규제 동향	15
가. 총 괄	15
나. 국별 동향	19
3. 2006년 수입규제 전망	44
가. 총 괄	44
나. 주요국별 전망	45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64

1. 최근 국제 통상 환경

□ WTO에서 허용한 수입규제 조치의 활용

○ 반덤핑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5년 6월 말까지 총 41개국에 의해 2,743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중국(434건), 한국(212건)은 최대 피소국
- 2001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인도, 미국, EC 주요 반덤핑 활용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남아공의 경우 2005년도 상반기에 활용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세이프가드

- 2001,2002년도의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대폭 감소
-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복잡한 산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서 주로 활용
- 2005년 1월 1일부로 섬유쿼터제 폐지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요국과 중국 간 섬유협정 체결로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의 활용 빈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상계 관세

- 2004년 중 총 8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이는 2003년 15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임.
- 지금까지 미국, EC, 캐나다 등은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완만히 증가할 전망(캐나다 정부 2005년 상반기 중 중국산 카본스틸 스크루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 섬유쿼터 폐지 이후 양국간 섬유 협정 체결 움직임 활발

- 미국, EU 등 대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국가들이 중국과 양국간 섬유협정을 체결, 새로운 국면에 돌입
- EU는 2008년 말까지 3년간 중국산 의류 및 섬유 수입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제한하는 것에 양국이 전격적으로 합의함
- 미국은 2006년부터 3년간 총 34개품목에 대해 수입증가율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섬유협정을 체결

□ 美,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에 인한 통상압력강화 의견 대두

- 美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6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이에, 美 의회에서는 새로운 무역정책의 필요성 강조

2. 2005년도 수입규제 동향

□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2개국으로부터 총 11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2002년 131건 -> 2003년 131건 -> 2004년 130건 -> 2005년 하반기 11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05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4건 등임.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이 31건, 섬유류 24건, 전기전자 12건, 기타 15건 등임.

- 국별로는 중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0건, 인도 17건, 호주 10건, EU 8건, 남아공 6건 순임.

□ 2005년 중 신규 피소건은 총 12건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4건, 철강 1건, 섬유류 3건, 전기전자1건, 기타 3건이며, 피소형태는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2건임.
- 세계적인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 2005년 중 종료된 수입규제 조치는 26건임

3. 2006년도 전망

□ 美-中, EU-中 간 섬유협정 체결을 비롯한 美, EU정부의 통상마찰 해소 의지 강화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는 수입규제조치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국에서는 특정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 상존

-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 호주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및 자동차부품, 중국에서는 화공품, 철강제품 및 지류, 남아공에서는 인쇄용지 및 밸브류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 인도, 터키, 파키스탄, 중남미 국가 등지에서는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1. 최근 국제통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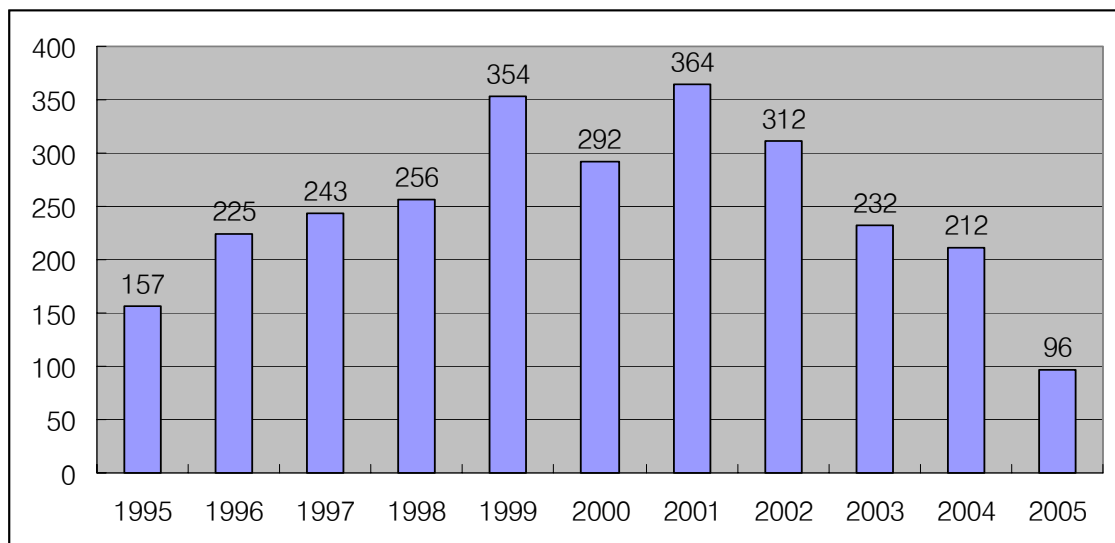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 활용

[반덤핑]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5년 6월 말까지 반덤핑 조치 2,743건 기록

- 1995년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10년 6개월 간 전체 41개국¹⁾에 의해 총 2,743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되었으며, 2005년 상반기에는 총 96건을 기록하였음.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주) '05 년도는 상반기 기준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전체 2,743건 중 434건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된 조사이며, 한국은 212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됨

1) EU는 1개국으로 간주하나, 슬로베니아·폴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은 EU 가입 이전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것을 감안 개별국으로 집계

□ 최근 3년 반 동안,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은 인도, 미국, EC 등이며, 주요 피소국은 중국, 한국, 미국 등으로 나타남.

○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 동안 10대 발동국 중심,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발동국 현황>

순 위	'02		'03		'04		'05(상반기)		누계치 (‘02+‘03+‘04+‘05상)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인도	81	인도	46	EC	30	남아공	17	인도	161
2	미국	35	미국	37	중국	27	EC	15	미국	102
3	중국	30	중국	22	미국	26	인도	13	중국	90
4	태국	21	한국	18	터키	25	중국	11	EC	72
5	EC	20	캐나다	15	인도	21	터키	8	터키	62
6	터키	18	멕시코	14	아르헨	12	이집트	7	남아공 호주	35
7	호주	16	인니	12	캐나다	11	미국	4		
8	아르헨	14	터키	11	호주	9	멕시코			
9	페루	12	호주	8	브라질	8	말련		캐나다	31
10	멕시코	10	남아공	8	페루	7	브라질 페루 이스라엘	3	한국	29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임.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년~2005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조사 개시한 국가는 인도로 총 161건을 기록
- 상기 누계치(‘02~‘05상반기)기준, 남아공이 6번째 반덤핑 조치 활용국으로 꼽히고 특히, 200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7건으로 최대 반덤핑 조치 발동국이 된 점은 주목할만한 점

-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 동안 10대 피소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피소국 현황>

순 위	'02		'03		'04		'05(상반기)		누계치 (‘02+‘03+‘04+‘05상)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중국	51	중국	52	중국	49	중국	22	중국	174
2	한국	23	미국	21	한국	24	대만	9	한국	69
3	러시아	18	한국	17	대만	21	인도	8	대만	59
4	대만	16	일본	16	미국	14	미국	7	미국	54
5	인도	16	인도	15	태국 브라질	9	태국 인니	6	인도	46
6	일본	13	대만	12					일본	41
7	인니	12	EC	10	인도 일본 인니 러시아	8	한국 말련	5	태국 인니	34
8	태국	12	인니	8			일본			
9	미국	12	말련	8				브라질 아르헨	3	EC
10	EC	10	태국	7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임.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으나, 중국, 대만 등 주요 반덤핑 피소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 건수는 크게 낮아지지 않음.
-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 건수의 경우 2003년 감소세에서 2004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다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조사 개시된 반덤핑 조사건수를 대상품목별로 분류하면,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 철강/금속, 의류/직물 등이 주된 타겟인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02		'03		'04		'05(상반기)	
산업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화학	136	43.6	94	40.5	92	43.4	41	42.7
철강/금속	96	30.8	52	22.4	36	17.0	16	1.7
의류/직물	6	1.9	14	6	21	9.9	10	10.4
전기/전자	9	2.9	14	6	14	6.6	5	5.2
제지류	7	2.2	20	8.6	8	3.8	2	2.1

*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의류/직물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 1월 1일부로 해제되는 섬유쿼터에 대비하여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의 증가추세가 섬유쿼터해제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5년 상반기에도 많은 수의 조사 개시 건수를 보임.
- 예측 불가능한 상황(unforeseen developments)을 제외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연평균 200 여건 내외로 머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섬유쿼터 폐지를 전후로 조사 개시 건수가 증가했던 의류/직물의 경우, 최근 中-EU, 中-美간 섬유협정 체결로 향후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건수가 기존의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감소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현황>

(단위 :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6	계
조사개시	2	5	3	10	15	25	12	34	15	14	4	139
SG발동	-	1	3	4	6	7	9	16	15	4	3	68

주) '05년 자료는 '05년 상반기 기준

* 자료 : Committee On Safeguard Practice, WTO

○ 2001년, 2002년에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해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하였으나, 2003년 이후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짐.

○ 세이프가드 주요 발동국은 전통적인 반덤핑 조치 활용국이 아님.

<세이프가드 주요 발동국 현황>

구 분	인 도	칠 레	요르단	미 국	체 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한 국	기타	계
조사개시	15	10	10	10	9	7	6	4	68	139
SG발동	8	6	4	6	5	3	0	2	34	68

주) 조사개시건수는 '95~'05년 상반기 누계

발동건수는 '96~'05년 상반기 누계

* 자료 : Committee On Safeguard Practice, WTO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이프가드조치는 주로 개도국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이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섬유 쿼터가 2005년 1월 1일부로 완전 해제됨에 따라 섬유 산업에서 반덤핑 조치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과 주요국간 섬유협정 체결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활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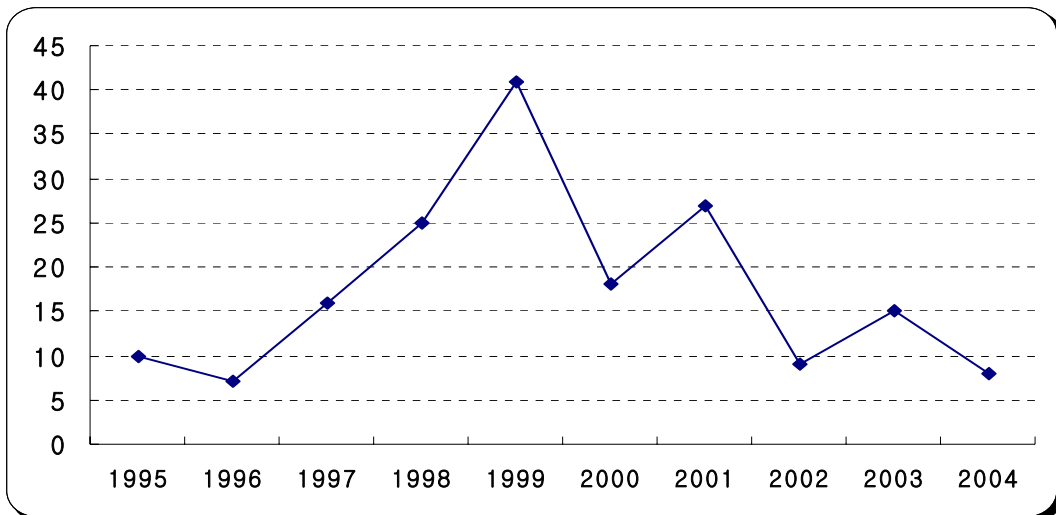
- 특히,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증가세에 있었으나, 中-EU, 中-美간 섬유협정 체결로 상당수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중단됨.

[반보조금/상계관세]

□ 2003년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2004년 조사 개시 건수는 이의 절반에 못 미침.

<연도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단위 : 건)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

자료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 상계관세 조치는 적절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나, 반보조금 조사는 수출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니게 됨.
- 덤핑 마진 계산보다, 보조금 계산법은 아직 덜 발달된 상태이므로, 수입국 정부가 보조금 계산을 위해 덤핑 마진 산정법을 원용할 경우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시장 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status)로 분류된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 개시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캐나다, EC 등은 이제까지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2004년 캐나다는 중국을 대상으로 2건의 상계관세 부과

☞ 캐나다무역재판소는 최근 판결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되는 중국산 카본 스틸 스크루 등 파스너에 대해 중국 정부의 보조율을 32%로 결정하고 품목에 따라 최고 170%의 반덤핑 관세와 함께 킬로그램당 18센트 (약 US\$ 0.1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美하원은 최근 중국 위안화 페그제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는, 美 통상법에 의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Currency Act)

섬유쿼터 해제 이후 양국간 섬유 협정 체결 움직임 활발

□ 섬유쿼터제 2005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

- WTO 섬유협정(ATC)이 종료됨에 따라 각국은 유지하고 있던 섬유쿼터제를 2005. 1. 1부로 완전 폐지함.

□ 美-中, 섬유협정 타결로 새로운 국면 돌입

- 2005. 11. 8, 美-中 간 포괄적 섬유협정 합의

- 미국과 중국은 2005. 11월 총 34개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섬유협정에 합의함.

- 금번 섬유협정은 그 품목이나 수입제한량에 있어,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보다 산업 보호 효과가 커 미국내 섬유산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는 실정

-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됨.

- 미국은 섬유협정 합의에 따른 조치로 對中 섬유 세이프가드 조사 중지를 발표

- 중국과의 섬유협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2005. 11. 23 발표를 통해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24개품목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함.

<美-中 섬유 협정 주요 내용>

○ 협정 유효 기간 : 2006. 1. 1 ~ 2008. 12. 31(3년간)

○ 협정 대상 품목 : 총 34개 품목

- 핵심품목 : 면 니트셔츠(cotton knit shirts), 인조사 니트셔츠 (man-made fiber knit shirts) 등 14개 품목
- 비핵심품목 : 핵심품목 외 20개 품목

○ 주요 내용

- 연도별 수입제한증가율

연도 수입제한증가율	2006	2007	2008
핵심 품목	5.5%	7.8%	10.3%
비핵심 품목	8~10%	12.5%	15~16%

- 섬유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 협정 효과

- 미국섬유협회연합회(NCTO)는 동 협정으로 핵심품목의 미국 수입 이 향후 3년간 물량기준으로 약 3.8%정도 증가하는데 그칠것으로 전망 (WTO 가입합의서에 합의된 증가율 : 7.5%(울제품 6%)

○ 양국의 입장

- 美 정부 및 업계에서는 동 협정 내용에 대해 크게 환영
- 중국 언론은 동 협정에 내용에 대해 불만스러움을 표시

□ EU, 콜롬비아 등도 중국과 섬유협정 체결 및 착수

- EU는 대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등 EU내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류 9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여 양 국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최근 2008년 말까지 3년간 중국산 의류 및 섬유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제한하는 것에 양국이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섬유분쟁 일단락
- 콜롬비아에서는 현재 중국산 원단과 의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중이나 수입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섬유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중

美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의회의 압력 강화될 전망

□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연도별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 규모 >

(단위 : 백만 US\$, %)

	2002	2003	2004	2005(1~9)
對中 무역수지	-103,064.7	-124,068.2	-161,937.9	-146,317.6
총 무역 수지	-468,262.8	-532,350.3	-650,929.5	-554,856.8
對中 무역수지 적자 비중	22.0	23.3	24.9	26.4

* 자료 : WTA(World Trade Atlas)

- 미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적자 규모는 총 7,06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對中 무역적자 규모는 연말까지 총 2,000억 달러의 단일국가 대비 가장 큰 적자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美 의회, 새로운 무역정책의 필요성 강조

- 美 의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환율조작, 미국지적재산권해적행위, 저가 의류품 등으로 인한 자국산업 피해를 문제로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촉구
 - 美 의회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 주장
- 특히, 미의회는 WTO DDA 협상에서도 반덤핑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와 관련, 국내 입법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반덤핑 관련 규범이 개정될 경우 DDA 협상 전체의 비준 거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Washington Trade Daily, November 9, 2005)을 밝히는 등 향후 의회의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활동 강화압력이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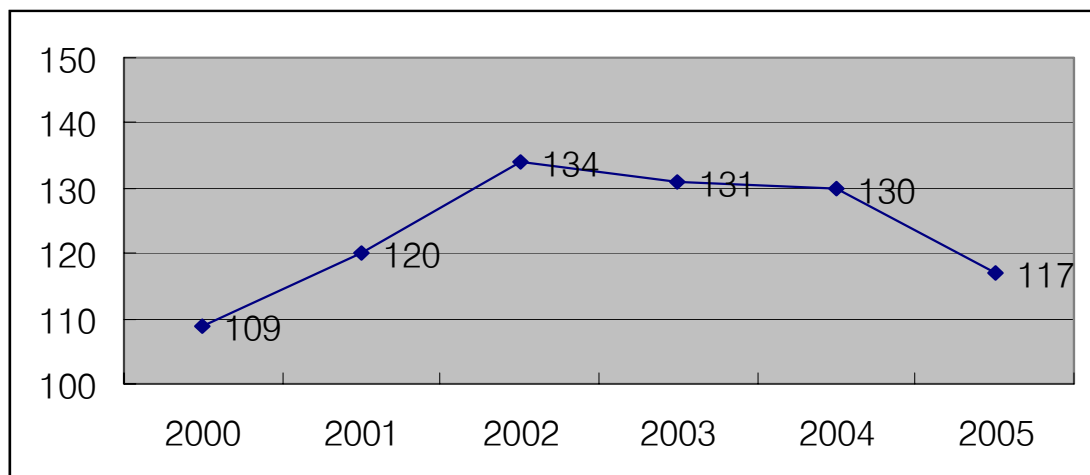
2. 2005년 수입규제 동향

가. 총 괄

□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17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중인 것은 103건이며, 조사 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 중으로 집계)은 14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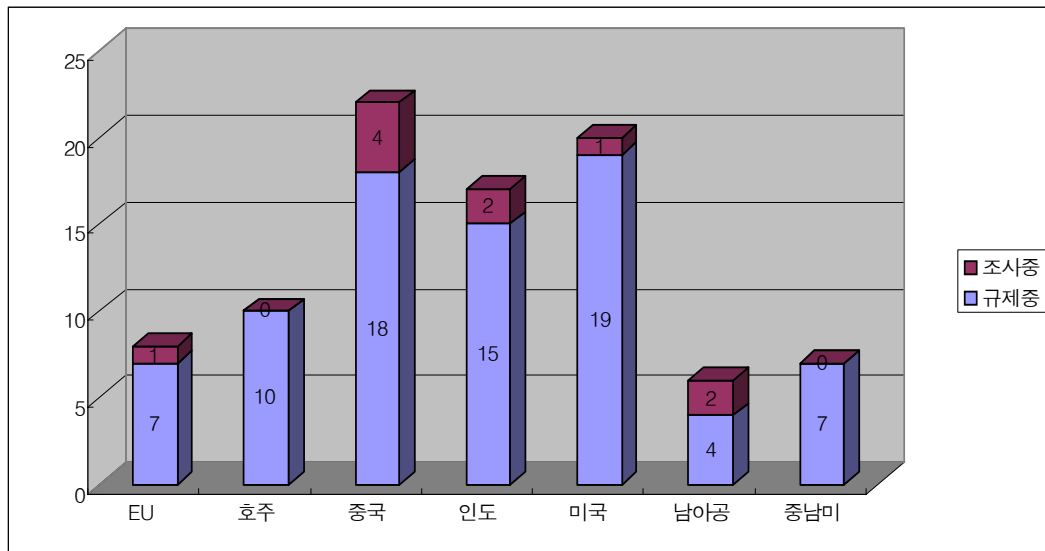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 추이>



- 2002년까지 계속되던 수입규제 확산세가 2003년 잠시 주춤한 후, 2004년 다시 확산되다 2005년 들어서 급감함.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05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4건 등임.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31건, 섬유류 24건, 전기·전자 12건, 기타 15건 등임.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13건) 및 인도(9건), 철강제품은 미국(14건) 및 남아공(4건), 섬유류는 터키(6건) 및 인도(5건), 전기·전자는 EU(4건)에서 주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0건, 인도 17건, 호주 10건, EU 8건 순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중남미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포함

<2005년도 신규 피소 현황>

연번	조사개시	피 소 품 목	제소국가	유형
1	2. 27	PET 칩	말레이시아	반덤핑
2	2월	Big-Diameter Pipes	러시아	세이프가드
3	4.13	폴리우레탄(스판텍스)	중국	반덤핑
4	4.19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남아공	반덤핑
5	5.12	Polyster Filament Yarn	파키스탄	반덤핑
6	6.2	양문형 냉장고	EU	반덤핑
7	6.21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미국	반덤핑
8	6월	폴리에스터 안	인도	반덤핑
9	7월	나일론 필라멘트사	인도	반덤핑
10	8.8	백상지	남아공	반덤핑
11	9.15	옥탄올	중국	반덤핑
12	10월	NaCN	러시아	세이프가드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4건, 철강 1건, 섬유류 3건, 전기전자 1건, 기타 3건이며, 피소 형태는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2건 등임.
- 2004년 중 개시된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8건이었으나, 2005년에 개시된 건수는 이보다 감소한 12건에 달함.

<연도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해당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신규피소건수	32	27	24	17	28	12
선진국	12	8	8	5	10	2
개도국	20	19	16	12	18	10

* 자료 : KOTRA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 미국, EU 등의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발동국 이외에 개도국에 의한 조사 개시가 총 건수의 약 80%인 10건에 이르러 개도국에 의한 수입규제가 강화됨을 반증
- ☐ 2005년 중 종료된 수입규제조치는 26건 임.(2005년 상반기 집계시 미과약분 포함)

<2005년 종료 수입규제조치>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유형
1	미국	배관용 탄소강관	2.1	반덤핑
2	미국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2.28	반덤핑
3	캐나다	철근	1.11	반덤핑
4	캐나다	스테인레스 봉강	1.18	반덤핑
5	캐나다	탄소강관	6.3	반덤핑
6	EU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	4.8	반덤핑
7	EU	합성고무	6.15	반덤핑
8	EU	컬러TV 브라운관	10.21	반덤핑
9	EU	철강제 로프·케이블	10.22	반덤핑

10	EU	전자저울	12.1	반덤핑
11	EU	주철제 관연결류	12.9	반덤핑
12	페루	섬유류	5. 4	세이프가드
13	호주	HSS 형강	5.4	반덤핑
14	호주	냉장고	6.18	반덤핑
15	인도	톨루엔	1.19	반덤핑
16	인도	자동차용 배터리	1월	반덤핑
17	인도	시안화나트륨	1월	반덤핑
18	인도	구연산	8월	반덤핑
19	인도	폴리에스터 필름	11. 15	반덤핑
20	남아공	스테인레스 싱크대	1.14	반덤핑
21	남아공	과산화수소	3.3	
22	태국	아질산염	2.25	반덤핑
23	아르헨티나	PET	9.22	반덤핑
24	아르헨티나	폴리에스터 단섬유	11.16	반덤핑
25	러시아	백설탕	-	-
26	일본	제주산 냉동육	-	-

주 : 러시아에서는 백설탕에 대해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 중이나 한국산 수출 실적 미미로 집계서 제외하는 한편, 일본의 제주산 냉동육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식물 및 동식물 위생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 조건하에 허용)로 수입 가격 및 물량과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종료 규제로 간주하여 집계에 포함

나. 국별 동향

[미 국]

□ 2005년 현재 총 2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4건(조사중 1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 품목별로는 철강 14건, 석유화학 2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규제일자	유형	품목
'87.1.20	반덤핑/ 상계관세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 ITC, 일몰재심 긍정 판정('05. 10. 14) 이후 '05. 11. 17과 '05. 11. 22에 각각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유지 게시 - DOC, 반덤핑 마진을 명령('05. 9. 27) · Bum Koo : 31.23%, Dae Sung : 6.11%, Hai Dong : 12.14%, Kyung Dong : 8.36%, Namil Metal : 0.75%, 기타 업체 : 8.1% - DOC, 상계관세 명령('05. 10. 4) · 모든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 0.77%
'91.6.5	반덤핑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 ITC, 일몰재심 긍정판정('05. 9. 20) - DOC, 반덤핑 마진을 명령('05. 9. 9) · SKC : 13.92%, 기타 업체 : 21.5% · 코오롱-'96년 3번 연속 미소마진으로 제외

'92.11.2	반덤핑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 ITC, 일몰재심(full five-year reviews) 개시 결정('05. 10. 4) - DOC, 반덤핑마진을 확정('05.11.8) · Hyundai Steel Pipe (6.86%), Korea Steel Pipe (6.21%), Masan Steel Tube (11.63%), Pusan Steel Pipe (4.91%), 기타 (6.37%)
'92.12.30	반덤핑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 ITC, 일몰재심 공고('05. 9. 1) (notice of institution of reviews)
'93.2.23	반덤핑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 ITC, 일몰재심 긍정 판정 ('05. 9. 20) - DOC 명령('05. 9. 9) · Asia Bend: 21.2%, 기타 업체: 21.2%
'93.8.17	상계관세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93.8.19	반덤핑	- DOC,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지속명령 게시('00.12.15) - DOC, 관보 통해 반덤핑 마진을 잠정 판정 ('05.9.7) · Dongbu (2.42%), Dongshin(17.70%), HYSCO(0.0), POSCO (4.13%), Union (2.19%)
'95.8.11	반덤핑	Oil country tubular goods ('01.7.25 반덤핑관세 지속명령 게시)
'98.9.15	반덤핑	Stainless steel wire rod ('04.8.13 반덤핑관세 지속명령 게시)
'99.5.21	반덤핑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 ITC,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04.10. 21) - DOC, 반덤핑관세 지속명령 게시('05.7.18) · 포스코(6.08%), 기타(6.08%)
'99.7.27	반덤핑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99.8.6	상계관세	- DOC, 반덤핑/상계관세 지속명령 게시 ('05.8.6)

'00.2.10	반덤핑/ 상계관세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 ITC, 지속 판정('05.11.8) - DOC, 관보 통해 반덤핑/상계관세를 판정('05.11.8) · 반덤핑 : Dongkuk Steel(2.98%), 기타(2.98%) · 상계관세 : Dongkuk Steel(2.36%), 기타(2.36%) (POSCO는 미소마진을 0.82%로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
'00.5.25	반덤핑	Polyester staple fiber - ITC, 2005.7.5 일몰 재심 개시 결정 이후, DOC에서 2005.8.5 관보 통해 반덤핑마진을 확정 · Sam Young Synthetics (7.91%), 기타 (7.91%)
'00.8.14	상계관세	Structural steel beams
'00.8.18	반덤핑	- ITC, 일몰재심 개시 결정('05.8.5) - DOC, 관보 통해 각각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해 일몰재심 긍정판정('05.9.9, '05.9.7) · 반덤핑 : INI Steel (25.31%), 기타(37.25%), · 상계관세 : Kangwon (3.88%), Dongkuk Steel (1.34%), 기타(3.87%))
'01.5.18	반덤핑	Stainless steel angle
'01.9.7	반덤핑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02.3.7	반덤핑	Stainless steel bar
'03.8.11	상계관세	D-RAM - '05.9. 15 관보 통해 연례재심 결과 상계관세를 인상(44.29→60.44%) 잠정 판정
'03.10.1	반덤핑	Polyvinyl Alcohol
'04.1.28	반덤핑	PC 강선
'05.6.21	반덤핑 조사개시	Diamond Sawblade - ITC, 예비 긍정 판정('05.7.29) - DOC, 예비판정 결과 발표 ('05.12.20) · 덤핑마진을 : 6.15%~11.25%

□ 2005년 중 대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건수는 1건임.

- 2005년 5월 3일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업체 연합은 한국산,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Diamond Sawblade)에 대해 반덤핑 제소, 미 DOC는 6월 21일 조사개시 결정

품목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비고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8202.39	반덤핑	'05.6.21	예비 피해 긍정 판정

- 한국 피소업체는 이화다이아몬드 공업, 신한다이아몬드 공업, 효성 다이아몬드 공업 등임.

□ 2005년 중 총 2건의 반덤핑 규제 철회

- 배관용 탄소강관(Certain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에 대한 제소 철회
 - 2005년 2월 1일 제소 업체들의 제소 철회로 인해 무역위원회 조사종결
- 일몰재심 결과 1986년 5월 23일부터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에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를 2005년 2월 28일자로 철회

[캐나다]

□ 2005년 현재, 철강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규제 실시 중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고
구조용강관	반덤핑	'03.3.21	'03.8.19	'03.11.17	관세율 : 89%
스테인레스강선	반덤핑	'03.11.21	'04.4.2	'04.7.30	관세율 : 181% (정상가격 미제출)

*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005.11.29

□ 2005년도에 신규 조사개시된 품목은 없으며, 철근(2005.1.11), 스테인레스 봉강(2005.1.18) 및 탄소강관(2005.6.3)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철회되는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대폭완화

-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건축경기의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적인 철강부족 사태로 철강의 국내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또한, 캐나다 서부에서 에너지개발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수송용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필요한 각종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역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완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반덤핑규제 해제 품목>

품목	유형	제소일	최종판정	종료일
탄소강관	반덤핑	'82.9.14	'84.6.27	'05.6.3
스테인레스봉강	반덤핑	'98.12.3	'99.6.18	05.1.18
철 근	반덤핑	'99.06.16	'00.1.12	'05.1.11

*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005.11.29

[EU]

- 2005년 현재 반덤핑7건 (규제중 6건/조사중 1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종료시기	비고
3.5플로피디스크	반덤핑	'92.9.18	'94.9.10	'06.2.22	관세율 : 8.1%
칼라TV	반덤핑	'92.11.25	'95.3.27	'07.8월	관세율 : 15%
PET 칩	반덤핑	'99.11.6	'00.11.30	-	'05.12.1 종료재심 및 부분관보재심 관보공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99.10.7	'00.12.28	'10.3월	재심결과 반덤핑 관세율변경
PET 필름	반덤핑	'00.5.27	'01.8.23	'06.8월	-
철강제 관련결구류	반덤핑	'01.6.1	'02.8.24	'07.8월	'03.5월 관세율인하
D-RAM	상계관세	'02.7.25	'03.8.11	-	관세율 : 34.8% '05.3 재심관보공고
양문형냉장고	반덤핑	'05.6.2	-	-	-

- 2005년 6월 양문형냉장고에 대해 신규 반덤핑조사 개시

- Whirlpool사가 2005.4.18일 덤핑 제소한 것이 받아들여져 EU집행위는 2005. 6. 2일자로 400리터 초과 양문형냉장고에 대해 조사개시 함.
- 양문형 냉장고의 수출규모는 04년도 기준 4억불

□ 2005년 하반기 중 컬러TV 브라운관과 주철제 관련결구류 그리고 전자저울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 종료

○ 컬러TV 브라운관은 1999년 9월 조사가 개시되어 2000년 10월 20일자로 반덤핑관세가 부과(19.7%)되었으나 2005년 10월 21일부로 반덤핑관세부과 종료

○ 주철제 관련결구류는 1999년 5월 조사가 개시되어 2000년 8월 18일자로 반덤핑관세가 부과(영화금속 13.4%, 기타 23.4%)되었으나 2005년 12월 9일부로 반덤핑관세부과 종료

○ 전자저울은 1999년 9월 조사가 개시되어 2000년 11월 30일자로 반덤핑관세가 부과(CAS 0%, 기타 4.9%)되었으나 2005. 12. 1일부로 반덤핑관세부과 종료

□ 2005년 중 합성고무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 그리고 철강제 로프·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 합성고무는 2004년 4월 13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5월 28일자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주EU 한국대표부에 보낸 공식서한(2005.6.15)에서 덤핑 무혐의를 근거로 조사종료를 통보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는 2004년 1월 28일 조사가 개시되어 미소마진으로 2005년 4월 8일 조사 종결

○ 철강제 로프·케이블은 2004년 11월 20일 조사가 개시되어 미소마진으로 2005년 10월 22일 조사 종결

[터 키]

□ 2005 현재 6건의 반덤핑 규제(재심중 2건, 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98.1.27	'99.11.30	관세율: 7.06%~21.2% '04.11월 만료후 재조사 진행 및 반덤핑 재 실시결정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관세율: 11.9%~24.6% '05.3월 만료후 재조사 진행중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 6.28	관세율 : 33.7% '05.6월 만료후 재조사 진행중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5407일부	반덤핑	'99.11.1	'02.2.13	관세율 : 51%~40%
금속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04.9.24	관세율: US\$ 22 / Kg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0.20	반덤핑 조사 개시	'04.12.9		

□ 2005년 중 신규로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바는 없음.

- 한국 수출품의 경우, 터키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줄 만큼의 저가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규제 대상국가가 아닌 상태이며,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대부분 만료된 건에 대한 재조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저가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 강화 추세

○ 2005년 신규로 조사개시된 총 9건의 반덤핑 규제중 중국산에 대한 조치가 8건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이는 중국의 수출품이 터키 국산품과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2005년 1월 9일에는 중국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42개 섬유품목에 대해 쿼터를 부과한 바 있음.

[멕시코]

☐ 2005년 현재 2개의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관세율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92.3.19	'93.1.20	'93.8.19	374~32%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반덤핑	'99.12.22	'00.10.3	'01.6.22	16.03%

☐ 2005년 한국산에 대해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음

☐ 2005년 7월 12일부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중 로우 멜티드(low melted)에 한해 규제를 종료

[아르헨티나]

☐ 2005년 현재 반덤핑 4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종료시기	비고
냉연강판(CRS)	반덤핑	'01.7.19	'03.1.8	'08.1.12	관세율 : 60.46%
아연철판 (Galvanized Steel Sheet)	반덤핑	'02.5.30	'03.5.23	'08.5.29	관세율 : 49.67%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반덤핑	'99.12.2	'01.8.7	'06.6.1	관세율:US\$8.73/Kg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직물	반덤핑	'04.2.23	'05.8.22	'08.8.22	관세율:US\$7.59/Kg (비텍스취드) 관세율:US\$6.56/Kg (기타)

☐ 2005년 한국산에 대해 신규 제소 및 조사개시된 품목은 없음.

☐ 2005년 11월 16일부로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 2005년 중,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 2004년 12월 조사개시된 한국산 PET에 대하여 2005년 9월 22일 반덤핑 무혐의 판정 및 조사종결

[브라질]

☐ 2005년 현재 총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종료시기	비고
나일론 6번사	반덤핑	'00.1.12	'01.6.28	'06.6.28	관세율 : 52%~522%

☐ 2005년 중 신규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및 제소는 이루어지지 않음.

☐ 환율강세에 따른 수입 증대로 수입규제 가능성 잔존

○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자국의 수출호조와 경기회복으로 수입 규제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최근 자국환율강세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

- 특히, 중국산 섬유 및 기타 제품에 대해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 수입규제 총 조사건수 52건 중 절반가량이 중국산에 대한 조치임.

[이집트]

☐ 2005년 현재 총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타이어	반덤핑	'98.9월	'99.7.8	'99.7.13	관세율 : 5.5%~17% ('05.3.17일자로 '09.10.2까지 연장)

- 이집트는 경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였으나 상반기 중 무역적자 액이 100억불에 달함에 따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시사하고 있음.
- 최근 이집트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Nahdit Misr사와 Elctronic Appatus사가 베트남산 18~40와트 형광램프를 덤핑혐의로 이집트 통상부에 제소하여 10월30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중 신규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향후 수입규제 조치 발동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임.

[남아공]

- 2005년 현재 6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2건)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스텐레스 용접관	7306.40	반덤핑	'98.7	'98.12 (무혐의)	'99.6	관세율 : 47.6% 일몰재심('03.5) 관세부과 연장('04.7)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8	'99.2	'99.9	관세율 : 40% 일몰재심 통해 관세부과 연장('04.8)
Suspension PVC	3904.10	반덤핑	'00.6	'00.12	01.6	관세율 : 41.31% '06.6.15 관세 부과종료 예정
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반덤핑	'00.10	'02.3	'02.9	관세율 : 10.4%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3907.60	반덤핑	'05.4	'05.10	-	잠정관세율 : 19.7%
백상지	4810.92	반덤핑 조사개시	'05.8	-	-	신규피소

□ 2005년도에 총 2건의 반덤핑규제 종료

- 한국산 스테인레스 싱크대와 과산화수소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2005. 1. 14과 2005. 3. 3, 각각 종료됨.

□ 2005년도에 2건의 우리나라 제품이 덤핑혐의로 피소되어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에 대해서는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백상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 임.

- 폴리에틸렌수지용기(PET : Polyethelene Terephthalate Polymer)는 2005년 4월 19일 조사개시되어 2005년 5월 10일 잠정관세 부과됨. (잠정관세율 : 19.7%)
- 백상지(Multi-ply Paper and Paperboard, 중량 180g/m²~550g/m²)의 경우에는 2005년 8월 8일 조사가 개시되어 현재 조사 중임.

□ 남아공 정부는 2005년 들어 상반기에만 무려 17건의 반덤핑 신규 조사를 단행

- 남아공의 경우, 2001년~2004년 동안 반덤핑 신규조사건수가 연평균 6건에 불과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동안 신규조사 건수가 17건으로 급증
- 이처럼 올해 들어 반덤핑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상품의 남아공 수입시장 장악에 대한 남아공 산업계의 반발,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한 남아공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 강화 때문
- 주요 보호산업은 섬유, 철강, 제지, 석유화학산업 등으로 반덤핑 조치와 함께 라벨링 규정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여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음.

[뉴질랜드]

□ 2005년 현재 총 3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최종판정	비고
냉장고	반덤핑	'01.6.10	
세탁기	반덤핑	'01.6.10	
오일필터	반덤핑	'05.1.14	관세율 : 12~15%

□ 2005년 1.14일 한국산 오일필터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 함.

□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및 임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자유무역을 통한 주요 공산품의 수입 및 자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낙농제품의 수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수입관세 일부 철폐 및 인하를 통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부터 대부분의 관세부과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짐.

[호 주]

□ 2005년 현재 총 10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현황>

품목	HS CODE	유형	최종판정	종료시기	비고
동관	7411.10.00/11	반덤핑	'01.4.19	'06.4.18	'04.6.28 재심개시 (능원금속제외)
			'03.5.23	'08.5.23	능원금속

백판지	4810.13.90/56	반덤핑	'05.7.27	'10.7.7	관세율 : 31.7%
	4810.19.90/57				
	4810.29.90/64				
	4810.29.90/80				
	4810.99.00/85				
철/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52.00/41	반덤핑	'04.4.2	'09.4.1	
폴리에틸렌 (HDPE)	3901.20.00/03	반덤핑	'03.12.18	'08.12.17	
폴리에틸렌 (LDPE)	3901.90.00/06	반덤핑	'03.12.3	'08.12.3	'05.9.23, 연례 재심결과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대외비임
폴로이스	3907.20.00/36	반덤핑	'02.4.27	'07.4.26	
EPS	3903.11.00/12	반덤핑	'92.11.4	'07.11.4	
PVC	3904.10.00/18	반덤핑	'00.3.24	'10.3.24	'05.11.9 재심 완료 관세부과기간 5년 연장
UI형강	7216.31.00/30 7216.32.00/31	반덤핑	'02.7.6	'07.7.5	
세탁기	8450.11.00/40/0 3/04	반덤핑	'03.9.18	'08.9.17	'05.7.13, 재심 덤핑마진 0 으로조정 (덤핑규제 자체는 유지하되 그간 지불하였던 덤핑 관세에 대해 환급조치 예정으로 알려짐)
	8450.20.00/08				

□ 2005년에는 신규 대한수입규제 조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05년 중 총 2건의 반덤핑 조사가 종료됨.

○ 냉장고 (8418.10, 8418.21)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16일 재심결과
덤핑무혐의에 따른 반덤핑조사 종결 조치 인정

○ HSS형강 (7306.30, 7306.60)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1일 재심결과
반덤핑조사 종결 조치 인정('05.10.21)

[중 국]

□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는 총 22건(조사중 4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고
신문용지	반덤핑	'97.11.10	'98.7.9	'99.6.3	관세율 : 55~78% '04.6.30반덤핑관 세부과 연장 발표
폴리에스테르필름	반덤핑	'99.3.16	'99.12.29	'00.8.25	관세율 : 13~46%
스텐레스냉연강판	반덤핑	'99.6.17	'00.4.13	'00.12.18	관세율 : 6~58%
폴리우레탄발포제	반덤핑	'00.12.20	'01.8.16	'02.6.20	관세율 : 4~66%
폴리에스터단섬유	반덤핑	'01.8.3	'02.10.22	'03.2.3	관세율 : 2~48%
폴리에스터칩	반덤핑	'01.8.3	'02.10.29	'03.2.3	관세율 : 5~52%
아크릴레이트	반덤핑	'01.10.10	'02.12.5	'03.4.10	관세율 : 2~49%
아트지(동판지)	반덤핑	'02.2.6	'02.11.26	'03.8.6	관세율 : 4~71%

무수프탈산(PA)	반덤핑	'02.3.6	'03.1.7	'03.9.6	관세율 : 0~66%
합성고무(SBR)	반덤핑	'02.3.19	'03.4.16	'03.9.9	관세율 : 0~38%
PVC	반덤핑	'02.3.29	'03.5.12	'03.9.29	관세율 : 0~55%
TDI	반덤핑	'02.5.21	'03.6.10	'03.11.22	관세율 : 3~49% '05.2.3 재심개시
페놀	반덤핑	'02.8.1	'03.6.9	'04.21	관세율 : 3~144%
클로로포름	반덤핑	'03.5.30	'04.4.8	'04.11.30	관세율 : 32~96%
광섬유	반덤핑	'03.7.1	'04.6.16	'05.1.1	관세율 : 7~46%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반덤핑	'03.12.17	'04.8.3	'05.6.17	관세율 : 28~184%
골판지	반덤핑	'04.3.31	'05.5.31	'05.9.30	보증금비율 : 11.0~65.2%
EPDM	반덤핑	'04.8.10	'05.9.29	-	잠정관세율 : 13~35%
핵산	반덤핑 조사개시	'04.11.12	'05.11.11	-	조사기간 연장
ECH	반덤핑 조사개시	'04.12.28	'05.9.21	-	잠정관세율 : 4.3~71.5%
폴리우레탄	반덤핑 조사개시	'05.4.13	-	-	-
Octanol	반덤핑 조사개시	'05.9.15	-	-	-

□ 2005년 중 3가지품목에 대해 신규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2가지 품목에 대해 반덤핑신규조사 개시됨.

- 2005년 1월1일부로 광섬유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고, 히드라진 히드레이트는 2005년 6월 17일 그리고 골판지는 2005년 9월 30일부로 반덤핑관세부과 대상품목이 됨.

- 2005년 4월 13일 폴리우레탄(스판텍스)에 대한 신규조사 개시되었고, 2005년 9월 15일에는 옥탄올에 대한 신규조사 개시 됨.

[일 본]

-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1건, 상계관세 1건(조사중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폴리에스텔 단섬유 (HS 550320)	반덤핑	'01.4.23	'02.7.27	○ 덤핑마진 : 0~13.5% (2007.6.30까지) ○ 피소기업 : 삼영합섬, 성림,대양산업, 휴비스 등
DRAM (하이닉스)	상계관세	'04.8.3		○ 조사기간 6개월 연장 ('06.2.3 까지)

- 2005년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 경제규제완화, FTA 강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에서도 기본적인으로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나, 국민의 건강 및 안전관리(농수산물 등), 지적재산권 보호(특허관련, 부정·위조상품 단속 등) 과 관련해서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대 만]

-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고
Portland cement	2523.29.90 2523.10.90	반덤핑	'01.6	'02.1	'02.4	관세율 : 110.99%~126.81%

□ 2005년 중, 신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없었으나, 한국산 스테인레스 와이어 로드에 대해 제소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임.

○ 관련 정부 기관과 접촉결과, 관련안건에 대한 제소는 없었음.

○ 한편, 燐興사 측에서는 정식으로 대만 정부에 관련 안건을 제소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저가 한국산 제품에 주의하고 있으며, 동사안에 대한 상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힘.

[인 도]

□ 2005년 현재 반덤핑 규제 16건(조사중 2건)과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고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400259	반덤핑	'96.3	'96.12	'97.7	관세율 : US\$1,692.12~2,314.8/톤 '05.6.6일 중간재심 결과 금호석유화학 13.22%, 기타 업체 48.75%
아크릴 단섬유	5501.50 5503.30	반덤핑	'96.9	'97.10	'00.4	관세율 : US\$0.16~0.366/Kg '00.4 중간재심최종판정 '02.8월 일몰재심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 U\$0.225/Kg, 덤핑마진 16.53%
SBR (합성고무)	400219	반덤핑	'98.4	'99.4	'99.8	'04.7.28 일몰재심 최종판정 관세율 : U\$0.0689/Kg 덤핑마진 8.55% * 현재 1900시리즈 우리나라 수출물량 없음

Sodium Cyanide (NaCn)	283711	반덤핑	'99.3	'99.12	'00.6	'05. 9. 27 일몰재심 판정 EU는 대상에서 제외, 미국, 한국은 반덤핑부과 계속 관세율 : 3.71%~38%
EPDM	400270 400290	반덤핑	'99.8	'00.5	'00.9	관세율 : U\$2,418.5/MT
POY (Partially Oriented Yarn)	540242	반덤핑	'01.8	'01.11	'02.9	관세율 : U\$0.605/Kg
PIB (Poly Iso-Butylen)	390220	반덤핑	'01.9	'02.1	'02.10	관세율 : US\$1,037.77/톤
압연롤 (Forged Roll)	845530	반덤핑	'02.8	'03.1	'03.8	관세율 : US\$2,851.91/톤
가성소다 (Caustic Soda)	281511 281512	반덤핑	'02.5	'02.12	'03.9	관세율 : US\$295.27/톤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sulphite)	283110	반덤핑	'02.11	'03.4	'03.12	관세율 : US\$1,034.76/톤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283640	반덤핑	'02.12	'03.6	'04.2	관세율 : US\$9.45~123.86/톤
염화 메틸 (Methylene chloride)	290312	반덤핑	'03.2	'03.20	'04.8. 18	관세율 : US\$34.43~42.42/MT
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290532	반덤핑	'03.8	-	'04.8	관세율 : US\$1,221.38/MT
폴리올 (Flexible Slabstock polyol :PPG)	390720	반덤핑	'02.5	-	'04.11	관세율 : US\$1,472.77/MT 덤핑마진 : 37.01~56.87%

폴리에스터 안	540243	반덤핑 조사개시	'05.6	-	-	-
나일론 필라멘트사	5402	반덤핑 조사개시	'05.7	-	-	-
녹말류	110814 110819 190300 350510	세이프 가드	'04.7	-	'05.2	녹말류 세제품 중 Sago와 Modified Starches을 제외한 Starch의 인도내 수입시 향후 3년간 가격기준으로 1차년도 33%, 2차년도 23%, 3차년도 13%의 긴급수입관세 부과

☐ 2005년 폴리에스터 안과 나일론 필라멘트사 2개 품목에 대해 신규조사 개시

☐ 2005년 총 2건의 반덤핑규제 철회

○ 2004년 8월 조사가 개시되었던 구연산에 대해서 2005년 8월 반덤핑조사 종료

○ 2000년 11월부터 폴리에스터 필름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는 2005. 11. 15부로 종료

- 덤핑기간 중 반덤핑 제소자 및 피소자 양측으로부터 재심에 대한 요청이 없는 바, 시간 경과로 인해 자동종결됨.

[인도네시아]

□ 2005년 현재 2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제소일	최종판정	진행 상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9.16	관세율 : 7~10% 재심 진행중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 59.64%

□ 2005년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규제소 혹은 조사개시는 없음.

- 다만, Ceramic Tableware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대한 최종 심의과정 진행 중

☞ Ceramic Tableware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에 따른 것으로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미하여 교역에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어 집계시 제외함.

[태 국]

□ 2005년 현재 총 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강판	7208, 7211.13 7211.14 7211.19	반덤핑	'02. 7	'03.6.13	관세율 : 13.96%
스텐레스 압연강판 (냉간압연품)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	반덤핑	'02.11	'03.3.24	관세율 : 51.54%

* 자료 : Department of Foreign Trade

- 2005년도 중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조치 없음.
- 2004년 6월 25일 개시된 한국산 아질산염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제소 철회로 인해 2005.2.25일부로 조사종료(2005 상반기 집계시 미집계)
- 저율 일반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열연강판의 수입쿼터를 119만톤에서 170만톤으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
 - 현재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중단(2004.3.29~9.19) 후, 2004. 9. 20부터 반덤핑관세 재부과 중
 - 태국 상무부는 동 조치가 태국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아연도금)에 있어서의 철강 공급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철강수요업체, 제조업체 및 전경련과의 상호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힘.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태국 철강 산업 연합은 동 조치로도 지속되고 있는 철강공급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함.
 - 이번에 반덤핑 면제 쿼터를 총 51만 톤 늘린다고는 하지만 일본, 한국, 대만 등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14개국의 공급여건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국별 수입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반덤핑 관세 면제 수입쿼터 확대 일정>

(단위 : 천 톤)

구분	1차년 (~'04.7)	2차년 (~'05.7)	3차년 (~'06.7)	4차년 (~'07.7)	5차년 (~'08.7)	합 계
기존(A)	470	380	240	90	10	1,190
변경(B)	470	448	460	285	37	1,700
증감(B-A)	-	68	220	195	27	510

주) : 쿼터 내의 철강수입에 대해서는 5%의 일반관세가 부과됨.

* 자료 : 태국 상무부

[말레이시아]

□ 2005년 현재 총 3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고
인쇄용지	반덤핑	'03.1.16	'03.5.2	'03.9.26	관세율 : 43.24%
무수말레산	반덤핑	'04.6.10	'04.10.7	'05.2.4	관세율 : 26.34%
PET칩	반덤핑	'05.2.27	'05.6.2	'05.10.21	관세율 : 17.09%

□ 2005년 폴리에틸렌 테레플레이트에 대해 신규 반덤핑 관세 부과

- 2005년 10월 21일부로 폴리틸렌 테레플레이트에 대해 17.09% 반덤핑 관세 부과

[러시아]

□ 2005년 현재 총 3건(조사중 2건)의 세이프가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Electronic Filament Lamps	세이프가드	'04.9	'05.5	관세율 : 20% 단, 0.03Euro/1unit 이상일 때
Big-Diameter Pipes	세이프가드	'05.2		
NaCN	세이프가드	'05.10		

□ 2005년 Big-Diameter Pipes와 NaCN에 대해 세이프가드 신규조사 개시

- 2005년 2월 조사가 개시되었던 Big-Diameter Pipes는 당초 2005년 11월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연방 경제발전통상부의 결정으로 3개월간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

- 직경 508mm 이상 파이프를 대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조사중임.

- NaCN은 2005년 10월 조사개시 됨.

- 현재 NaCN의 주요 대러 수출국은 한국 및 일본임.

[파키스탄]

-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총 2건(조사중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VC resin	반덤핑	'04.6.26	'05.2.24	관세율 : 40.18%
Polyester Filament Yarn	반덤핑	'05.5.12	-	잠정반덤핑관세율 : 8.92%~29.07%

- 2005년 5월 12일 한국산 Polyester Filament Yarn에 대해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

- 2005년 11월 12일 예비판정에서 8.92~29.07%의 잠정반덤핑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함.

- 잠정반덤핑관세는 4개월간(2005.12.1~2006.3.1) 적용될 예정

3. 2006년도 수입규제 전망

가. 총 괄

□ 2006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IMF(2005.9)는 2006년 세계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05년의 4.3%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나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미 FRB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연착륙 국면 돌입 등으로 체감경기는 다소 둔화될 전망

□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의 철강재를 비롯한 원자재 수요 증가, 美-中, EU-中 섬유협정 협정 체결을 비롯한 미국, EU정부의 통상마찰 해소 의지 강화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는 수입규제조치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등 일부국가와 자동차와 같은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강화될 가능성 상존

○ 대체로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책 강화에 따라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

○ 미국, 캐나다 등은 자동차, 호주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및 자동차부품이, 중국은 화공품, 철강제품 및 지류가, 남아공은 인쇄용지 및 밸브류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 인도, 터키, 파키스탄, 중남미 국가 등지에서는 주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수입규제가 집중되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나. 주요국별 전망

[미국]

□ 경상수지 적자가 2005년도 1~9월중 US\$5,540억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동 기간(2005. 1월~9월) 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US\$140억에서 US\$12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대한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반전 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상존

○ OECD, EIU등은 내년도 美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미국 행정부가 외교적 채널을 통해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마찰을 해소하려는 입장이어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발동 가능성은 낮은 전망

○ 최근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명을 보류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마찰의 확대를 피하는 대신 중국의 개혁성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정책방향 선회

-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회 및 제조업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협의 등의 외교적인 채널을 활용할 것임을 천명

- 의회 자체적으로 “Currency Act” 등의 보호주의적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미행정부의 정책적인 기조가 “자유 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타겟에서 제외된 듯

- 우리나라의 주요 對미국 수출 품목인 철강제품의 미국기업 수익률이 양호하고, 미국내 주택 경기 활황으로 인해 철강 수요가 높은 편임.

<美 조립 철강제품 연도별 수익률>

(단위 : %)

	2003	2004	2005:Q1	2005:Q2
Fabricated Metal Products	8.5	10.3	8.8	11.4

* 자료 :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자동차도 알라바마 등지에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미국과 통상 마찰을 줄이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對한국 수입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GM, 포드를 비롯한 美 BIG 3 자동차 제조업체가 일본,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의해 판매율/수익률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 2005년 하반기부터 캐나다화 강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에 반해, 아직까지도 US \$ 1대비 CAN \$ 1.15선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약세 및 수입증가에 지속되는 한편, 중국산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감 고조

- 현재 캐나다는 전반적으로는 대외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나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 중국산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 증폭

- 섬유업계의 경우 쿼터 철폐 이후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호책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자전거 프레임, 바비큐기기, 가구 등에는 관련 협회로부터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이 있었음.
-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특정 한국제품의 對 캐나다 수출이 급증한다 하더라도 캐나다 국내업계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계속 해제되고 있는 추세임.
- 자동차부품 등 일부 업계, 한국과의 교역에 불만제기가 변수
 - 캐나다 자동차업계에서는 2004년 기준 對韓 무역적자 US \$ 27억 중 절반이 넘는 US \$ 15억 가량이 자동차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임을 주장(상기 수치는 캐나다 통계청 집계 기준임)
 - 현재로서는 자동차 및 관련제품에 대한 제재조치 단행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자동차산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한국산의 수입증가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U]

- 불공정 교역행위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장벽을 도입하지 않고 유럽시장의 개방 및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
- 핵심적인 노동기준 및 환경보호를 위해 통상정책을 활용해 나갈 생각이나, 위장된 보호주의(disguised protectionism)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 예상

- 2005년도 개시된 반덤핑 조사 11건중 7건이 중국과 관련되는 등 2004년(9건)부터 EU의 대 중국 수입규제 강화 양상

☐ 현재로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가 거론되는 품목은 없으며 자동차와 평판디스플레이의 對EU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004년도 3%에서 2005년도 3.7%로 증가하였고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 수출액이 6,731백만불로 작년 동기대비 32.4% 상승
-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 수출액이 969백만불로 작년 동기대비 171.2% 상승

[터키]

☐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터키의 '05년 1월-10월간 對韓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199백만불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것임.

☐ 통상환경

-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수입품의 대부분이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인 경우가 많아 별다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 한국의 수출은 2004년 71.4%의 급증에서 2005년의 경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20% 이상을 기록중.

- 2005년 1-10월 수출이 23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2.8% 증가

- 한국 수출품의 경우 터키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가 제품이 아니며, 터키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성격이 강한 관계로 특별히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멕시코]

- 최근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 부문 제조업체들이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투자확대·에너지 부문 공급체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금년 하반기에 화학, 석유화학, 플라스틱분야의 반덤핑조사 증가건수가 5건을 기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실제 수입 규제 건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에 금년 하반기에 조사 중인 기타 제조업, 금속, 기계장비, 기초금속산업, 섬유, 의류, 가죽 제품에서 다소 수입규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업계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동 제품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섬유, 의류, 가죽제품 조사건수가 1건에 불과한 상황임
- 최근 멕시코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2006년에도 신규 수입 규제 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아르헨티나]

- 자본재, 원부자재 등의 경우는 국내 투자활성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규제가 심하지 않으나 의류, 완구 등은 수입 대체화를 위하여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한국의 매년 1~2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2005년의 경우 소강상태이며 현 단계에서 특별히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 우리나라의 對 아르헨티나 수출 급증시 쇠고기 수입규제와 연계하여 가전제품 등의 수입규제도 예상되나 2006년 중 조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 업계와 언론의 관심 품목은 완구, 신발, 의류 등이며 동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미미하여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음.
- 아르헨티나 정부와 업계는 브라질산 및 중국산 제품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이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동반하여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브라질]

- 금년 12월 현재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한 1,074억불을 기록하고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한 669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흑자가 404억불에 달하여 최근 수년 최대치를 기록함.
- 헤알화 강세현상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규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무역보호부는 인터넷을 통하여 덤핑, 세이프가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 10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법으로 정하였음.
- 또한 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취해진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2005. 10월부터 브라질정부는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 인도산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음.
- 한국산의 경우 섬유를 제외하고는, 브라질 경쟁산업과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음. 단, 한국 카메라, MP3 등 전자제품 등의 밀수가 늘고 있는 바, 브라질 정부에서 통관검사를 강화함.

[이집트]

- 통상정책의 주된 기조는 WTO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 자유무역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이 필요한 상품과서비스를 원활하게 조달하면서도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 섬유, 자동차, 의류, 의약 분야의 경우 4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각종 승인제도와 검역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수입을 억제
- 반면 화학수지, 섬유기계, 각종 공산품 원부자재와 같은 필수 원자재는 5% 이내의 저율의 세율을 적용, 수입을 촉진하고 있음.
- 한편, 이집트는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입지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여 전세계 3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양대 시장인 EU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관세를 면제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음.
- 단, 행정시스템 운영의 후진성과 의식부족으로 자국의 수입통관 절차나 통상정책의 운용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중성을 보여 주고 있음.

□ 2004. 9월 1일 WTO 가입이후, 고율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의 수입규제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보다 자유로운 무역 통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부 소비재나 기초 산업제품의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저가의 중국산 및 동구권 국가의 제품에 집중되어 우리나라 제품이 수입규제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연간 교역액은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약 8억8천만 불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수출 5억6천만 불,수입이 1억5백만 불로 작년에 비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우리의 주력수출품들이 이집트의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부자재, 기계류 등이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특정 수입규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섬유제품이나 화학수지, 인쇄용지 등 일부 완성품이나 원자재 등의 수출단가가 이집트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지 않는 한 향후 반덤핑 등 특별한 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됨.

[남아공]

□ 2006년 남아공 경제는 올해의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나, 높은 실업률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고용창출 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 유지 전망

- 우리나라의 남아공 수출주력 품목은 주로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등인데, 남아공 산업구조상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는 남아공 산업에서 그 비중이 높아 우리 수출이 급증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규제를 당할 개연성이 있음.

□ 2006년도에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인쇄용지 및 밸브류임.

- 현재 우리나라 인쇄용지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남아공 업체의 반덤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관계당국 접촉결과, 아직 정식제소는 없었으나, 업체로부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업체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밸브류의 경우도 현재 우리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남아공 밸브 협회에 정부에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

□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예상

- 현재 남아공 섬유업계는 중국제품의 시장장악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남아공 정부에서도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상무부에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Technical Task Team”을 설치할 정도로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급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남아공 상무부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Specific Safeguard)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뉴질랜드]

□ 2005년 이후는 경기의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플레이 우려가 가속화되고 자국 화폐의 급속한 평가절상으로 수출부진과 수입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 어려워지는 교역환경과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입규제 대상이 공산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의 개연성도 있음
- 다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건설중장비, 전기전자 및 산업용 기계 등이 뉴질랜드 국내생산이 없거나 자국 산업의 필요에 의해서 수입하는 품목들로서 수입 규제의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현재로서는 수입급증 품목 혹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불만에 기초한 추가적인 수입 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對 뉴질랜드 수입은 목재, 낙농제품, 소고기 등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수출은 전기전자제품 등에 국한되고 있고 뉴질랜드의 對한국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의 개연성은 낮은 편임
- 자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농산물과 임산물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규제보다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혹은 교역 확대를 위한 개방화 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호주]

- 경상수지 확대 추세 둔화 전망
-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으나 이는 주로 소득수지 적자 증가(배당금 및 이자 송금)에 의한 것으로 무역적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Melbourne Commonwealth Game 등으로 서비스 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의 높은 경상수지 적자는 향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 등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피소가능성 있음.
 -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은 여전히 반덤핑 피소대상 가능성이 높으며, 가전제품과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신문용지 등도 피소의 가능성 있음.
 - 최근 자동차부품업계의 불황이 극에 달해 정부가 외투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호주부품 사용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 증가율은 70%에 육박,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도 있음.
 - 다만, 금년 들어 상기 품목들의 대한수입증가율이 대부분 10~15% 수준이며(가전제품은 감소세) 한국의 대호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 무역 역조의 관심이 중국에 몰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한수입규제의 대폭 확대는 없을 전망이다.

[중국]

- 중국 정부의 재정긴축기조 지속 예상
 - 중국은 철강, 자동차, 시멘트,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의 과잉 투자로 촉발된 경기 과열로 2004년 4월부터 긴축 선회를 공식화했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2005년에 이어 2006년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 전반적인 내수 소비시장도 여전히 공급과잉 속에 소비 심리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저가상품은 구조적으로 반덤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여전함
- 2006년에는 외국과의 무역마찰 완화를 위해 반덤핑 조치에 매우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됨
 - 종래의 일률적인 수출장려-수입제한 정책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수입절차 간소화와 품목별 수입장려 조치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수입 확대 쪽으로 무역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급팽창하는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2006년에는 대대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 개인소득세 감면 폭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같은 대책들이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임.
 - 그러나 단기간에 내수 진작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으며 내수를 자극하면서 위안화의 급격한 환율변동, 서방과의 무역마찰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결국 수입확대 쪽으로 무역정책 변경 예상
- 재래-첨단 업종 가리지 않고 피소 위험 존재
 - 화공 등 재래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5년 1월 1일에는 광섬유에 대한 최종판정을 통해 7~46%의 덤핑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첨단 품목에 대해서도 덤핑조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첨단 품목의 경우, 미국 업체를 겨냥해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한국 기업들이 한데 묶여 조사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한-중 무역불균형 추세

- 한국의 對中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통계 기준 시, 119.21억 달러(2000) → 108.52억 달러(2001) → 130.73억 달러(2002) → 132.01억 달러(2003) → 201.78억 달러(2004)로 급증해왔으며 2005년 1~10월까지는 193.9억 달러로 전년 연간 흑자(201.78억 달러)에 접근하며 연말까지는 2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 확실해 여전히 흑자 기조가 지속되며 그 폭이 커지고 있음
- 중국 측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0월 중 한국의 흑자는 약 339억 달러로 폭이 더욱 커짐
- 최근 다소 줄어들었으나 중국이 무역불균형 해소 주장을 재개할 개연성이 상존해 이에 대한 체계적/합리적인 방어논리 확립 필요성이 여전
-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최근 수출증가 품목으로써 규제 가능성 상존 품목

- 화공품
 - HS CODE 2단위 기준(29)으로 2004년과 2005년 1~10월 각각 49.6%와 25.9%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임
 - 화공품은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사가 자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여타 품목에 대비 규제 가능성이 가장 큼
- 철강제품
 - 2004년까지는 규제 가능성 크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중국내 부동산 과열 단속을 통한 건축 수요 일시 감소로 재고가 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 수출시 주의를 요함

○ 종이류

- 현재로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존 전망

[일본]

- 동식물의 경우 질병 발생관련 수입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농수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토마토, 피망 등 긴급감시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일본정부는 정부 내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일본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음.
- 반도체를 비롯하여 액정패널, PDP, 유기EL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관련 분야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제소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품목별로는 현재 일본정부가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DRAM반도체의 경우 상계관세 부과 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대만]

- 대만 경제부 무역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2002년 4월10일 수입공고를 통해 471개 항목의 철강제품에 대해 동년 4월 15일부터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2002년 9월부터 임시 세이프가드 가동 시스템을 통하여 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중국의 저렴한 섬유 제품이 대량 대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국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즉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 제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2008년 말까지)
- 금년 대만의 수출은 수입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10월까지의 무역수지는 34.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1억 달러가 감소된 48.1% 감소함.
- 대만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며, 최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대만의 제2대 수입국으로 등장하고 있음.
-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는 일본과 한국으로 금년 10월 기준, 각각 전년 동기대비 9.3%, 26.7% 증가 한 269.3억 달러, 62.7억 달러임
 - 최대 무역적자국인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11건 중 5건
- 대만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만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만 제품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2006년 대한 수입규제의 신규 제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단, 2005년 중 대만 업체가 한국산 스테인레스 와이어 로드에 대한 반덤핑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인도]

- 인도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005년 10월 현재 20억불(수출 37.4억불, 수입 17.2억불)을 넘어서고 있어 대한 수입규제의 확대 가능성 존재

- 다만 최근 인도의 수입 급증이 고유가와 함께 경기 활황에 따른 자본재, 산업용 중간재 및 부품 등 수출을 위한 자본재 성격이 짙어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수입규제로 직접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자세임.
- 또한 대한 수입규제의 경우 대상품목들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과는 거리가 있어 수입규제가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무역수지 흑자국인데다가 수입규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입규제활동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전망.
- 인도네시아는 연간 200억불을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20억불을 상회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 무역부문중 수입관리 정책은 밀수입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세관행정의 부패 방지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다만, 의류, 철강 분야 등 최근 중국산 저가제품이 급증하는 산업에서는 섬유협회 등 업종단체에서 자국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율 인상요구 또는 수입제한 조치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

[태국]

□ 제조업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對태국 주력 수출품목은 태국 내 제조기반에 사용되는 자본재, 원부자재 등 인데, 제조업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對태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고유가에 따른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각종 수입 억제 정책을 태국 정부가 유도

- 고유가 지속으로 민간소비 위축 및 생산원가 상승 우려
- 2004년 태국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한데 이어 2005년 3월중 디젤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 보조금 지급으로 유예되었던 고유가의 영향이 2005년 태국경제에 이미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

[말레이시아]

□ 2005년 1~9월간 말레이시아 수출은 RM391.16billion(10.5% 증가), 수입은 RM319.4billion(8.6% 증가)으로 무역수지는 RM71.76billion(19.5% 증가)을 기록함. 무역흑자 기조는 97년 11월 이후 95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중간재 가공 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제재가 미미한 편임.

-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건수는 평균 1~2건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품 중 특별히 수입규제 대상 품목으로 주목할 만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005년 1~10월 수출 증가율은 4.1%로 2004년 16.3%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 중 선박해양구조물은 특성상 대금 결제시 실적이 집중되므로 큰 의미는 없음.
- 자동차는 20.9%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현지 합작을 통한 국민차 생산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규제가능성은 낮음.
- 집적회로반도체, 모니터는 무관세 품목이며 철강은 50%의 고관세 보호 품목이므로 덤핑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
- 우리나라와는 원유, LNG 등 수출과 전자부품, 철강 수입 등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 마찰 가능성이 낮은 편임.

[러시아]

- 10월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무역규모는 64억불 수준으로 수출 32.5억불, 수입 32.1억불을 기록하여 4천만불 규모의 무역 흑자 기록함.
- 그러나 현지 통관 시스템상 실질 수출액은 공식 통계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러시아산 제품의 품질이 선진국 수준과는 차이가 많아 수준이 유사하나 관세 회피 등 회색통관이 많은 CIS 역내 국가(특히 우크라이나)의 대러 수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Big-diameter pipe류, NaCN은 관련 현지 업체들이 강력히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 지난 9월 러시아와 벨라루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모임을 갖고 트럭류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음.

[파키스탄]

- 2005/2006 회계연도(2005. 7 ~ 2006. 6) 첫 분기의 파키스탄 경상수지는 총 14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 전년도의 1억 2천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으며 최근의 수입량 급증에 따라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임
-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임.
- 그러나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섬유, 의약품 등 현지 생산이 비교적 활발하고 관련 협회 등이 조직되어 있는 분야에서 수입규제가 추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음
- 파키스탄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자국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수입규제 강화 보다는 개방 쪽에 무게를 둔 정책방향이 예상되나 자국생산 기반이 비교적 확충된 산업 부문에 대한 보호정책도 일부 병행될 것으로 판단됨.

첨부

<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

(2005년 12월 현재)

국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미국	14(1)	1	5	0	20(1)
캐나다	2	0	0	0	2
EU	7(1)	1	0	0	8(1)
터키	6(1)	0	0	0	6(1)
멕시코	2	0	0	0	2
아르헨티나	4	0	0	0	4
브라질	1	0	0	0	1
이집트	1	0	0	0	1
남아공	6(2)	0	0	0	6(2)
뉴질랜드	3	0	0	0	3
호주	10	0	0	0	10
중국	22(4)	0	0	0	22(4)
일본	1	1	0	0	2
대만	1	0	0	0	1
인도	16(2)	0	0	1	17(2)
인도네시아	2	0	0	0	2
태국	2	0	0	0	2
말레이시아	3	0	0	0	3
러시아	0	0	0	3(2)	3(2)
파키스탄	2(1)	0	0	0	2(1)
합계	105(12)	3	5	4(2)	117(14)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5년 12월 현재)

국가	석유화학	철강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합계
미국	2	14	1	1	2	20
캐나다	0	2	0	0	0	2
EU	2	1	1	4	0	8
터키	0	0	6	0	0	6
멕시코	0	0	2	0	0	2
아르헨티나	0	2	2	0	0	4
브라질	0	0	1	0	0	1
이집트	0	0	0	0	1	1
남아공	0	4	2	0	0	6
뉴질랜드	0	0	0	3	0	3
호주	4	3	0	2	1	10
중국	13	1	2	0	6	22
일본	0	0	1	1	0	2
대만	0	0	0	0	1	1
인도	9	1	5	0	2	17
인도네시아	1	0	0	0	1	2
태국	0	2	0	0	0	2
말레이시아	2	0	0	0	1	3
러시아	1	1	0	1	0	3
파키스탄	1	0	1	0	0	2
합계	35	31	24	12	15	117

<끝>